

서울특별시의회
제277회 정례회

의안 번호	2164
----------	------

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7. 12. 6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전 문 위 원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164호, 2017년도 **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은 변경사항¹⁾이 없으며,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사업 추진 일정 조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 (설계비, 시설부대비 등)를 일부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하는 것임

1)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미조성

〈표 2-1〉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사업	변경 (A)	당초 (B)	증감 (A-B)	증감사유
수 입 합 계	18,061	18,060	1	
자 체 수 입	203	197	6	
이 자 수 입	203	197	6	
이 자 수 입	203	197	6	예치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
보전수입등내부거래	17,858	17,863	△5	
보 전 수 입 등	5,928	5,933	△5	
예 치 금 회 수	5,928	5,933	△5	2016년도 기금 결산 결과 반영
내 부 거 래	11,930	11,930	0	
전 입 금	11,930	11,930	0	
지 출 합 계	18,061	18,060	1	
재 무 활 동	17,753	12,556	5,197	
보 전 지 출	17,753	12,556	5,197	
시 금 교 육 예 치	17,753	12,556	5,197	지출계획 변경에 따 른 금고예치금 증가
기 관 운 영 관 리	308	5,504	△5,196	
교육행정기관시설	308	5,504	△5,196	
본 청 시 설 관 리 (신청사 건립)	308	5,504	△5,196	지출계획 변경에 따 른 사업비 감소
직속기관시설관리 (연수원 건립)	0	0	0	

Ⅲ. 검토내용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 설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설계비 등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운영하고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
〈표 3-1〉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변경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역	변경(A)	기정(B)	증감(A-B)
합 계		308	5,504	△5,196
건설사업관리	건설사업관리용역	0	1,000	△1,000
설계비 및 설계보상비	디자인키워드 개발 연구용역	20	20	0
	지질조사용역	20	20	0
	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역	250	250	0
	M P 수행 용역	8	8	0
	청사 설계 용역	0	3,731	△3,731
	설계보상비	0	100	△100
교통영향평가	교통영향평가용역	0	300	△300
시설부대비	공고료, 수용비 및 수수료	10	75	△65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2)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동 기금의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**기관운영관리**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(55억 400만원) 대비 △94.4%, △51억 9,600만원 감액된 3억 8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인 바, 대규모 지출 계획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 요청할 사안으로 판단됨
- 다만, 감채기금의 경우,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을 포함하여 “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”으로 제출한 바,
 -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기금 전부를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에 변경이 필요한 해당 기금만을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